

【 12 】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12.

제출자 : 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12.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12.31일까지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추가 (안 제1조)
- 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재산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조 제1항)
- 다. 제3조 제2항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중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조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함 (안 제3조 제2항 제4호)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문을 신설 (안 제6조의2)
- 마.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제2항)

- 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제17조)
-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출자범위를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으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조문 내용 수정 (안 제18조)
- 아. 부칙에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12.31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12.31일까지 조정 (안 부칙 제2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 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증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증상이자” 를 “증상이자 및 그 증상이자”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면제한다” 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증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사용하는” 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용하는” 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3호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6조다음에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조제4호중 “사회교육” 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9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제2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중 “사업을 하는자”를 “가공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7조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8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그 내용을”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30호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1항중 “공포한 날”을 “2007년 1월 1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양주시 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초 세액	감면 세액
감면사유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 조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양주시 장 귀하				
구비서류	감면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양 주 시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양 주 시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파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 <u>7</u> 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 <u>7</u> 조 및 제9조----- -----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u>증상이자</u> 및 그 유족과 그 <u>증상이자</u> 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 <u>증상이자</u> 및 그 <u>증상</u> <u>이자</u> ----- ----- ----- <u>면제하고, 국가유공</u> <u>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증상이자의</u> <u>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u> <u>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 ----- ----- -----	②----- ----- ----- ----- -----
<u>사용하는</u> 자동차로서-----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u>사용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 1. ~ 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p> <p>----- 사용하는 자동차로서-----</p> <p>-----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p> <p>-----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p> <p>-----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4. <신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p>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p>	<p>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 3.(생략) 4. <u>사회교육</u> 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 5. ~ 7.(생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 ----- ----- 1. ~ 3(현행과 같음) 4. <u>평생교육</u> ----- ----- 5. ~ 7(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에 대한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신설>	제9조(문화재에 대한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이하 생략)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하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p> <p>-----</p> <p>-----</p> <p>-----</p> <p>----- 「철도안전법」 제45조</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p> <p>-----</p> <p>-----</p> <p>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p> <p>-----</p> <p>-----</p> <p>-----</p> <p>-----</p> <p>-----</p> <p>-----</p> <p>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 -----</p>